

4.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9월 11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9월 11일
- 상정일자 :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9월 20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정영준)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% 범위 내에서 실·국·본부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시기구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기구 정원규정에 따른 추가 설치 기구(자율신설기구)로 전환하고,
-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급체계 구성을 위한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및 기구·정원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.

□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로 3급 기구를 추가로 2개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추가설치 기구(자율신설 기구)로 전환하고자 함.
-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급체계 구성 및 타 광역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범위에서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운용정원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,
- 일반직은 광역행정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에 맞게 초급행정 인력인 8·9급 비율을 2.5% 축소하고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중견실무 인력인 6급 비율을 2%, 4급 이상 관리자 비율을 0.5% 확대하였음.
- 소방직은 소방사 비율을 2% 축소하고 현장대응력 강화 및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안전센터 등 현장부서 팀장급인 소방위 비율을 2% 확대하였음.
- 별정직은 상위직급의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4급상당 이상 비율은 1%, 5급상당 비율은 5% 확대하고 현행 6급상당과 7급상당은 6·7급상당으로 통합하여 비율을 6% 축소하고 8·9급상당란은 삭제하여 현 정원의 직급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.

- 또한, 기구와 정원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대구광역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권영구)

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대구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기구와 정원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'19.10.31.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로 전환하며, 광역행정 사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직급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▶ 이 조례안은 본칙 5개장 96개조와 부칙 4개조 및 5개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▶ 안 제1장 총칙(안 제1조 ~ 안 제3조)에서는 「대구광역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」의 위임 근거 법령과 입안 목적 및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▶ 안 제2장 본청부터 안 제4장 사업소(안 제4조 ~ 안 제92조)에서는 대구광역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등 총 15국 82과 2원 1센터 8소방서 19사업소의 보조·보좌기관 설치와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소방서와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·위치·관할구역 등은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2를 따르도록 하였음.
- ▶ 안 제5장 지방공무원 정원(제93조~제96조)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, 정원채정기준, 4급이상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 - 이와 관련하여 안 별표 3에서는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을, 안 별표 5에서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현행 정원 조례와 동일하게 명시하였으며,
 - 안 별표 4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의 일반직·소방직·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채정기준은 광역행정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과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직급체계를 조정하였으나,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제 직급별 정원수에는 반영하지 않았음.
[안 별표 5 참고]

《 대구시 직급별 정원 운용 및 광역시 평균 현황 》

▶ 일반직공무원(제1호)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·9급	전문경력관
현 행	4% 이내 (129명)	14% 이내 (453명)	30% 이내 (971명)	36% 이내 (1,166명)	15% 이상 (488명)	1% 이내 (32명)
운 용	3.9% (127명)	13.4% (435명)	29.9% (969명)	36.0% (1,166명)	16.5% (536명)	0.2% (6명)
조정(안)	4.5% 이내	14% 이내	32% 이내	36% 이내	125% 이상	1% 이내
증 감	0.5%	-	2%	-	△2.5%	-
광역평균	4.67%	15.33%	32.83%	36%	10.25%	0.92%

※ 일반직공무원 총 정원 : 3,239명

▶ 소방직공무원(제3호)

구 분	소령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현 행	1% 이내 (26명)	3% 이내 (78명)	7% 이내 (184명)	8% 이내 (210명)	16% 이내 (420명)	30% 이내 (789명)	35% 이상 (924명)
운 용	0.5% (14명)	2.2% (57명)	6.4% (169명)	7.9% (209명)	12.6% (331명)	22.7% (597명)	47.7% (1,254명)
조정(안)	1% 이내	3% 이내	7% 이내	10% 이내	16% 이내	30% 이내	33% 이상
증 감	-	-	-	2%	-	-	△2%
광역평균	1%	3.17%	8%	9.5%	17%	31.17%	30.17%

※ 소방직공무원 총 정원 : 2,631명

▶ 별정직공무원(제4호)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·9급상당
현 행	39% 이내 (8명)	35% 이내 (7명)	25% 이내 (5명)	1% 이상 (1명)	-
운 용	38.1% (8명)	33.3% (7명)	23.8% (5명)	4.8% (1명)	-
조정(안)	40% 이내	40% 이내	20% 이상		삭제
증 감	1%	5%	△6%		-
광역평균	36%	30.83%	33.16%		-

※ 별정직공무원 총 정원 : 21명

- 그러나, 직종별 일부 직급의 경우 실 정원 운용인력과 정원 책정기준 간의 여유 인력으로 인하여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광역간 협업 추진시 직급별 균형이나 직원사기 양양 차원 등에서 향후 적절한 비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- ▶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, 다른 조례의 폐지 및 현행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음.
- 특히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8)의 규정에 따라 '19.10.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자율신설기구로 설치하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하여, 향후 대구광역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상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음.
- ▶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,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조직·정원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안 통합 개정의 필요성은

- 8) 제9조의2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 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③ 시·도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·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·국·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,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,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- ▶ 다만, 직급별 운용정원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정원채정기준 조정은 추가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, 향후에는 조직의 규모에 따른 필요 인력 및 타 광역시의 직급별 운용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간으로 한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의 추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별정직공무원 8·9급상당의 정원 비율을 삭제하는 사유는?	○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이나 시장 비서 및 보좌관으로, 현재 근무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8급과 9급은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비율을 조정한 것임.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- 없 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